의 안 번 호	제 305 호
의결년월일	1995. 10. 20 (제 38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5. 10. 9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 1995. 10. 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고성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고성군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조례는 폐지하고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도모.

나. 기존의 여러가지 지원대상 사업구분(일반소득,우수농고생,화훼기술)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다.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소득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하까지,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

라.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

마.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자금지원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지정금고)이 담당토록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소지 및 업무부담 해소.

3. 참고문

경남도진흥 13240-322(95. 6. 26)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수탁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31)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고성군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